|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1982년 8월 23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통과, 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1년 10월 27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3년 8월 30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19년 4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목 차**   1. **총 칙** 2. **상표등록 출원** 3. **상표등록의 심사와 허가** 4. **등록상표의 기간연장, 변경, 양도, 사용허가** 5.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6. **상표사용의 관리** 7. **등록상표전용권의 보호** 8.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며 생산자와 경영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촉구함과 동시에 상표의 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또한 경영자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상표국이 전국의 상표등록과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평심위원회를 설립하여 상표분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3조** 상표국의 등록허가를 받은 상표를 등록상표라 하고,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단체상표와 증명상표가 이에 포함된다. 상표 등록인은 상표전용권을 가지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서 언급한 단체상표는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명의로 등록되어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상업활동에서 사용하도록 제공됨으로써 사용자가 해당 조직의 구성원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가리킨다.  본 법에서 언급한 증명상표는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감독 능력을 구비한 조직이 규제하고, 해당 조직 이외의 기업 및 사업단위나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 원료, 제조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정 품질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표지를 가리킨다.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특수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규정한다.  **제4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활동에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국에 상품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은 거절해야 한다.**  본 법의 상품상표와 관련된 규정은 서비스상표에 적용된다.  **제5조** 2인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표국에 동일한 상표를 공동출원할 수 있고 해당 상표전용권리를 공동으로 가지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 법률과 행정법규가 필수적으로 등록상표의 사용을 규정한 상품은, 반드시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하고,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제7조** 등록출원과 상표사용은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상표사용자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책임져야 한다. 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8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이 문자, 도형, 자모, 숫자, 3D입체형상, 색채조합과 음성 등을 포함한 타인의 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표지 및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은 모두 상표로 간주되며 등록출원할 수 있다.  **제9조** 등록출원한 상표는 뚜렷한 특징이 있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상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표등록인은 ‘등록상표’ 또는 등록표기를 명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 아래 열거한 표지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1）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장, 군가, 훈장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 중앙국가기관의 명칭, 표지, 소재지 특정지역의 명칭 또는 대표성을 띠는 건축물의 명칭, 도형과 동일한 표지  （2）외국국가의 명칭, 국기, 국장, 군기 등과 같거나 유사한 표지. 단,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정부 간의 국제기구의 명칭, 기, 마크 등과 같거나 유사한 표지. 단, 해당 기구가 동의하거나 쉽게 대중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규제의 실시를 알리고 보증하는 관영표지 및 검증마크와 같거나 유사한 표지. 단, 위탁수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적십자회’, ‘홍신월’ ‘국제연합회’의 명칭과 표지와 같거나 유사한 표지  （6）민족적 차별성을 띠는 표지  （7）사기성이 있으며 대중이 상품의 품질 등 특성이나 생산지에 대하여 쉽게 오인 할 수 있는 경우  （8）사회주의 도덕적 기풍을 해치거나 기타 불리한 영향을 주는 표지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 또는 대중에게 익숙한 외국지명은 상표가 될 수 없다. 단, 그 지명이 기타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나 단체상표와 증명상표의 구성 부분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명을 사용한 이미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11조** 아래 열거한 표지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1）본 상품에만 통용되는 명칭, 도형, 모델명  （2）상품의 품질, 주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과 기타 특성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지  （3）기타 뚜렷한 특징이 부족한 표지  전 항에서 열거한 표지가 사용을 통해 뚜렷한 특징을 취득하고 식별이 용이해진 경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제12조** 3D입체형상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한 경우 상품자체의 특성만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 이미지, 또는 상품이 실질적 가치를 갖도록 하는 이미지는 등록할 수 없다.  **제13조** 관련 대중에게 익숙한 상표에 대해, 소유자가 해당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때,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저명상표(驰名商标)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 등록하지 않은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한 것으로, 쉽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록될 수 없고 사용이 금지된다.  같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한 것으로, 대중을 오도하고 저명상표 등록인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등록될 수 없고 사용이 금지된다.  **제14조** 저명상표는 당사자의 청구를 근거로 해야 하고 또한 이를 상표와 연관된 사건 처리에 있어 인정이 필요한 사실로써 인정해야 한다.  아래 요인을 고려하여 저명상표로 인정해야 한다.  （1）관련 대중의 해당 상표에 대한 지명도  （2）해당 상표의 사용 지속 기간  （3）해당 상표의 모든 홍보업무가 지속된 시간, 정도 및 지역범위  （4）해당 상표가 저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은 기록  （5）해당 상표가 저명해진 기타 요인  상표 등록심사와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상표위법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과정에서,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 상표국은 사건 심사와 처리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표의 저명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상표분쟁 처리과정에서,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사건 처리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표의 저명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상표민사, 행정사건 심리과정에서,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정한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표의 지명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생산자와 경영자는 ‘저명상표(驰名商标)’라는 글자를 상품이나 상품포장, 용기, 또는 광고홍보, 전시, 기타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위탁수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에 대해 등록출원하여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등록할 수 없고 사용을 금한다.  동일 품종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먼저 사용한 미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하고, 출원인이 해당 타인과 전 항의 규정 이외의 계약이나 업무거래 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고, 해당 타인의 상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아울러 해당 타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등록할 수 없다.  **제16조** 상표에 상품의 지리표지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상품이 해당 표지에 표기된 지역의 특산물이 아니어서 대중을 오도한 경우 등록할 수 없고 사용을 금한다. 단, 선의로 이미 등록 취득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전 항에서 언급한 지리표지는 모 상품의 원산지를 가리키며, 해당 상품의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징은 주로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적 요인과 인문 환경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표지이다.  **제17조**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출원할 경우 소속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 직접 처리할 수 있고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상표대리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상표대리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상표대리기관은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의뢰인의 위탁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이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대리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보호 의무가 있다.  위탁인의 등록출원 상표에 본 법이 규정하는 등록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상표대리기관은 위탁인에게 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상표대리기관은 위탁인의 등록출원 상표가 본 법 **제4조,** 제15조와 제32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해야 할 경우 이를 수임할 수 없다.  상표대리조직은 그 상표등록출원 대리서비스 외에, 기타 상표의 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제20조** 상표대리업계의 조직은 정관 규정에 따라, 회원 모집조건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고, 업계의 자율적 규범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 상표대리업계의 조직은 모집한 회원과 회원에 대한 징계상황에 대해, 즉시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제21조** 국제상표등록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관련 국제협약이 확립한 제도를 따르고,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2장 상표등록출원**  **제22조** 상표등록출원인은 규정된 상품분류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유형과 명칭을 기재하고 등록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서 1부로 여러 유형의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상표등록출원서 등 관련 문서는 서면형식이나 전자파일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 등록상표가 허가된 사용범위 외의 상품에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별도로 등록출원해야 한다.  **제24조** 등록상표의 표지를 변경하려면, 재등록 신청해야 한다.  **제25조** 상표등록 출원인이 해당 상표가 외국에서 처음 상표등록을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동일 품종의 상품에 대해 동일 상표로 등록출원할 경우 해당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양국이 공동 가입한 국제협약에 의거하거나 양국의 우선권 상호인정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누릴 수 있다.  전 항에 의거하여 우선권을 요구하려면 상표등록 출원시 서면형식의 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1차 제출한 상표등록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면 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상표등록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상표가 중국정부에서 주최하거나 인정하는 국제전람회에 전시된 상품에 처음 사용된 경우 해당 상품 전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상표의 등록출원인은 우선권을 누릴 수 있다.  전 항에 의거하여 우선권을 요구하려면 상표등록출원시 서면 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해당 상품의 전람회 명칭, 해당 상표가 전시 상품에 사용된 증거, 전시 일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 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 상표를 등록출원하기 위해 신고하는 사항과 제공되는 자료는 사실이어야 하고 정확해야 하며 완전해야 한다.  **제3장 상표등록의 심사와 허가**  **제28조** 등록출원하는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출원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본 법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초보심사결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29조** 심사과정에서 상표국이 상표등록출원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출원인에게 설명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출원인이 설명이나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은 상표국이 내리는 심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0조** 등록출원한 상표가 본 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타인이 동일 품종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기등록한 상표이거나 또는 초보심사결정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 상표국은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하지 않는다.  **제31조** 2인 또는 그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인이 동일 품종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초보심사절경하고 먼저 출원한 상표를 공고한다. 같은 날에 출원한 경우, 초보심사결정하고 먼저 사용한 상표를 공고하고, 기타 출원은 거절하며, 공고하지 않는다.  **제32조**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의 먼저 취득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부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선점할 수 없다.  **제33조** 초보심사결정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先)권리자나 이해관계자가 본 법 제13조 제2항, 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위반으로 보는 경우, 또는 임의인이 본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의 규정위반으로 보는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공고한다.  **제34조**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출원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출원인이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 출원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35조** 초보심사결정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인과 상표출원인의 사실과 이유에 관한 진술을 듣고 조사를 통해 진상을 확인한 후 공고기간 만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등록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인과 상표출원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연장이 필요할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의 등록결정한 경우,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신청인이 불복하는 경우, 본 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국의 등록불허 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복심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인과 상표출원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상표출원인이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신청인에게 제3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가 전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복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관되는 선권리의 확정이 반드시 인민법원에서 심리하고 있거나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원인이 소멸된 후 심사절차를 회복해야 한다.  **제36조** 법정기한일이 지나고 당사자가 상표국이 내린 출원거절 결정과 등록불허 결정에 대해 복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내린 복심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경우 출원거절 결정과 등록불허 결정 또는 복심결정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심사를 통해 이의가 성립하지 않아 등록을 허가한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 출원인이 상표전용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초보심사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만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기산된다. 해당 상표 공고기간 만기일로부터 등록허가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타인이 동일 품종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소급력을 갖지 않는다. 단, 해당 사용자의 악의로 인해 상표등록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해야 한다.  **제37조** 상표등록출원과 상표복심신청에 대해 즉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8조** 상표등록 출원인이나 등록인이 상표출원서류나 등록문서에 명확한 실수를 발견한 경우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법에 의거하여 직권 내에서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전 항에서 언급한 실수에 대한 정정은 상표출원서류나 등록문서의 실질적 내용과는 연관되지 않는다.  **제4장 등록상표의 기간연장, 변경, 양도, 사용허가**  **제39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등록을 허가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0조** 등록된 상표가 유효기간이 지나 계속 사용해야 할 경우 상표등록인은 만기 12개월 전부터 규정에 따라 연장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당 기간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의 연장기간을 줄 수 있다. 매회 연장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상표의 전 유효기간 만기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기한 내 연장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등록상표를 말소한다.  상표국은 연장 등록한 상표에 대해 공고해야 한다.  **제41조** 등록상표가 등록인 명의나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제42조**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양자가 공동으로 상표국에 신청해야 한다. 양수인은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상표등록인은 동일 품종의 상품에 등록한 유사한 상표 혹은 유사한 상품에 등록한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취합하여 함께 양도해야 한다.  쉽게 혼동을 일으키거나, 또는 기타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양도에 대해 상표국은 이를 허가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서면통지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한다.  양도한 등록상표는 허가를 받은 후 공고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전용권을 갖는다.  **제43조** 상표등록인은 상표사용 허가계약을 통해 타인의 해당 등록상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인은 피허가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감독해야 한다. 피허가인은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허가를 통해 타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피허가인의 명칭과 상품 생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타인의 해당 상표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인은 해당 상표사용 허가를 상표국에 신고해야 하고, 상표국은 이를 공고한다.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표사용의 허가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5장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제44조** 기등록된 상표가 본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 규정을 위반했거나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내린다. 기타 기업 및 사업단위나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국이 내린 등록상표 무효선고 결정에 대해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기타 기업 및 사업단위나 개인이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 무효선고를 청구할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하고, 기한 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등록상표의 유지 또는 무효선고의 재정(裁定)을 내려야 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재정 절차의 상대방 당사자를 제3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제45조** 기등록 상표가 본 법 제13조 제2항, 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으로 등록된 경우 저명상표 소유자는 5년의 시간제약을 받지 않는다.  상표평심위원회는 등록상표 무효선고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하고 기한 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등록상표의 유지 또는 무효선고의 재정을 내려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재정 절차의 상대방 당사자를 제3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전 항 규정에 의거하여 무효선고 청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선권리의 확정이 반드시 인민법원에서 심의하고 있거나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원인이 소멸된 후 심사절차를 회복해야 한다.  **제46조** 법정기한 만기시 당사자가 상표국의 등록상표 무효선고 결정에 대해 복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평심위원회의 복심결정, 등록상표 유지, 등록상표 무효선고 재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의 결정이나 상표평심위원회의 복심결정, 재정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제47조** 본 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효선고를 받은 등록상표는 상표국에서 공고하고, 동시에 해당 등록상표전용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록상표 무효선고 결정이나 재정은 무효선고 이전에 인민법원이 결정하고 이미 집행한 상표전용권 침해사건에 대한 판결, 재정, 중재조정서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결정하고 이미 집행한 상표전용권침해사건의 처리, 그리고 이미 이행한 상표양도나 사용허가계약에 대해 소급력을 갖지 않는다. 단, 상표등록인이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한다.  전 항 규정에 의거하여 상표전용권침해 배상금, 상표양도비, 상표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공정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실할 경우 전액 또는 부분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6장 상표사용의 관리**  **제48조** 본 법에서 언급한 상표사용은 상표가 상품, 상품포장, 또는 용기와 상품거래서류에 사용되거나 상표가 광고홍보, 전람, 기타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상표출처를 식별하는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제49조**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록상표, 등록인명의, 주소, 기타 등록사항을 자체적으로 변경한 경우 상표국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시정 명령을 내린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표국에서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등록상표가 사용을 허가한 상품의 통용명칭이 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든 기업 및 사업단위나 개인은 상표국에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취소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무효선고 되거나 또는 유효기간 만기에 연장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취소되거나 무효선고 되거나 또는 말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표국은 해당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출원에 대해 허가 하지 않는다.  **제51조** 본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한 내 등록출원을 명하고, 불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경영액의 20%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불법경영액이 없거나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52조** 미등록된 상표를 등록상표라고 기만한 경우나, 미등록된 상표 사용으로 본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이를 제지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리며, 통보할 수 있고, 불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불법경영액의 20%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불법경영액이 없거나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53조** 본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54조** 상표국의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나 취소불허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55조** 법정기한이 만기되고, 당사자가 상표국이 내린 등록상표 취소결정에 대해 복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평심위원회가 내린 복심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경우, 등록상표 취소결정과 복심결정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취소된 등록상표는 상표국에서 공고하고 해당 등록상표전용권은 공고일 부터 중지된다.  **제7장 등록상표전용권의 보호**  **제56조** 등록상표의 전용권은 등록을 허가한 상표와 사용을 허가한 상품에 한한다.  **제57조** 하기 행위 중 1개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에 해당한다.  （1）상표등록인의 허가 없이 동일 품종의 상품에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경우  （2）상표등록인의 허가 없이 동일 품종의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쉽게 혼동을 일으킨 경우  （3）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4）타인이 등록한 상표표지를 위조, 무허가 제조하거나 위조, 무허가 제조한 등록상표표지를 판매한 경우  （5）상표등록인의 동의 없이 해당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변경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경우  （6）고의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편의조건을 제공하고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경우  （7）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입힌 경우  **제58조** 타인의 등록상표나 미등록한 저명상표를 기업 명칭의 일부분으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부당경쟁행위가 성립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부당경쟁방지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59조** 등록상표에 본 상품의 통용명칭, 도형, 모델명이 포함되어 있거나 직접적으로 상품의 품질, 주요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기타 특성을 나타낼 수 있거나 또는 지명을 포함하는 경우 등록상표전용권 소유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할 수 없다.  3D입체형상으로 된 등록상표가 내포하고 있는 상품자체의 특성으로 생성된 이미지, 기술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이미지, 또는 상품이 실질적 가치를 갖도록 하는 이미지에 대해 등록상표전용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할 수 없다.  상표등록인이 상표등록출원 이전에 타인이 이미 동일 품종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상표등록인보다 먼저 사용한 경우 등록상표전용권자는 해당 사용자가 원래 사용한 범위 내에서 해당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할 권리가 없다. 단, 적당한 구별표지를 부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 본 법 제57조에서 열거한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행위 중 1개항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분쟁을 일으킨 경우 당사자는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안 되는 경우 상표등록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처리를 청구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처리할 때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명하고 침해상품과 침해상품 제조와 등록 상표표지 위조에 주로 사용된 도구를 몰수, 폐기하고 불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경영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불법경영액이 없거나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실시하거나 기타 정황이 심각한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하고,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판매금지를 명한다.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분쟁에 대해 당사자는 처리 진행하고 있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중재조정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61조**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진상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범법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62조**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이미 취득한 범법 혐의 증거나 제보에 근거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때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관련 당사자를 심문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관련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2）당사자의 상표전용권침해 관련 계약서, 영수증, 회계장부,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3）당사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활동에 종사한 장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권리침해활동 관련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증거 및 증명이 되는 물품에 대해 압류하거나 차압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앞 조항에서 규정한 직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고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상표전용권 침해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상표전용권이 분쟁이 있고 동시에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권리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사건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원인이 소멸된 후 사건에 대한 조사절차를 회복하거나 종결한다.  **제63조** 상표전용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결정한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해나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상표허가권의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악의적인 상표전용권의 침해와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상술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액수의 1배에서 **5배 이하**를 배상액으로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은 권리자가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사용한 합리적 지출을 포함해야 한다.  권리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 행위와 관련된 회계장부, 자료를 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권리침해자에게 권리침해행위 관련 회계장부, 자료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권리침해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조작한 회계장부, 자료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인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다.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손해,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 등록상표사용허가료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권리침해행위의 경중을 근거로 **5백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인민법원이 상표분쟁사건을 심리하여, 권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가짜 등록상표 상품에 대해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소각을 명령한다. 가짜 등록상표 상품을 만들기 위한 주요한 재료, 도구에 대해서, 소각을 명령하고, 보상하지 않는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전술한 재료, 도구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보상하지 않는다.**  **가짜 등록상표 상품은 가짜 등록상표를 제거해도 상업적 사용이 금지된다.**  **제64조** 등록상표전용권 소유자가 청구한 배상에 대해 권리침해 혐의자가 등록상표전용권 소유자의 등록상표를 미사용한 사실로 항변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등록상표전용권 소유자에게 최근 3년 이내 등록상표 실제사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상표전용권 소유자가 최근 3년 이내의 등록상표 실제사용에 대해 증명할 수 없고 권리침해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권리침해 혐의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록상표전용권에 대한 침해 상품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하고, 해당 상품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5조** 상표등록인이나 이해관계자는 타인이 해당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곧 실시하려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고, 이를 즉각 제지하지 않으면 그 합법적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제소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 중지와 재산보전 조치 명령을 내릴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66조**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증거가 소멸되거나 앞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표등록인이나 이해관계자는 법에 의거하여 제소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67조** 상표등록인의 허가 없이 동일 품종의 상품에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권리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외하고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표지를 위조하거나 무허가 제조하거나 또는 위조, 무허가 제조한 등록상표표지를 판매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권리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외하고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가짜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임을 알면서도 판매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권리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외하고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68조** 상표대리기관 행위가 아래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동시에 경고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직접적 책임이 있는 실무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하고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범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상표업무 처리과정에서 위조, 변경하거나 또는 위조, 변경된 법률문서, 인장, 서명을 사용한 경우  （2）타상표대리기관을 비방하는 등의 수단으로 상표대리업무를 유치하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대리업계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3）본 법 **제4조,** 제19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대리기관가 전 항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신용상황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에서 해당 상표대리기관에 대해 영업중지를 결정하고 이를 공지할 수 있다.  상표대리기관이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하고 상표대리업계는 정관 규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경위에 근거하여 경고, 벌금부과 등 행정처벌 한다. 악의적 상표소송 제기에 대해서, 인민법원은 법의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69조** 상표등록과 관리, 복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반드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결백해야 하며 직무에 충실하고 문명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와 상표등록과 관리, 복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상표대행업무와 상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70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건전한 내부 감독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상표등록과 관리, 복심업무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법률, 행정법규를 집행하고 기율을 준수하는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제71조** 상표등록과 관리, 복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와 상표등록과 관리, 복심사항에 대한 위법처리, 당사자의 뇌물수수, 부당이익 취득으로 범죄가 성립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린다.  **제8장 부 칙**  **제72조**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 비용을 교부해야 하고 구체적인 비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73조** 본 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동시에 1963년 4월 10일 국무원이 발표한 상표법관리조례를 폐기한다. 기타 상표관리 관련 규정이 본 법에 저촉될 경우 즉각 법적효력을 잃는다.  본 법 시행 이전에 등록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1982年8月23日第五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四次会议通过；根据1993年2月22日第七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十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的决定》第一次修正；根据2001年10月27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四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的决定》第二次修正；根据2013年8月30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四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的决定》第三次修正；根据2019年4月23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等八部法律的决定》第四次修正）  **目　录**  **第一章　总　则**  **第二章　商标注册的申请**  **第三章　商标注册的审查和核准**  **第四章　注册商标的续展、变更、转让和使用许可**  **第五章　注册商标的无效宣告**  **第六章　商标使用的管理**  **第七章　注册商标专用权的保护**  **第八章　附　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商标管理，保护商标专用权，促使生产、经营者保证商品和服务质量，维护商标信誉，以保障消费者和生产、经营者的利益，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的发展，特制定本法。  **第二条**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商标局主管全国商标注册和管理的工作。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设立商标评审委员会，负责处理商标争议事宜。  **第三条**　经商标局核准注册的商标为注册商标，包括商品商标、服务商标和集体商标、证明商标；商标注册人享有商标专用权，受法律保护。  本法所称集体商标，是指以团体、协会或者其他组织名义注册，供该组织成员在商事活动中使用，以表明使用者在该组织中的成员资格的标志。  本法所称证明商标，是指由对某种商品或者服务具有监督能力的组织所控制，而由该组织以外的单位或者个人使用于其商品或者服务，用以证明该商品或者服务的原产地、原料、制造方法、质量或者其他特定品质的标志。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的特殊事项，由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规定。  **第四条**　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在生产经营活动中，对其商品或者服务需要取得商标专用权的，应当向商标局申请商标注册。不以使用为目的的恶意商标注册申请，应当予以驳回。  本法有关商品商标的规定，适用于服务商标。  **第五条**　两个以上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共同向商标局申请注册同一商标，共同享有和行使该商标专用权。  **第六条**　法律、行政法规规定必须使用注册商标的商品，必须申请商标注册，未经核准注册的，不得在市场销售。  **第七条**　申请注册和使用商标，应当遵循诚实信用原则。  商标使用人应当对其使用商标的商品质量负责。各级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通过商标管理，制止欺骗消费者的行为。  **第八条**　任何能够将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的商品与他人的商品区别开的标志，包括文字、图形、字母、数字、三维标志、颜色组合和声音等，以及上述要素的组合，均可以作为商标申请注册。  **第九条**　申请注册的商标，应当有显著特征，便于识别，并不得与他人在先取得的合法权利相冲突。  商标注册人有权标明“注册商标”或者注册标记。  **第十条**　下列标志不得作为商标使用：  （一）同中华人民共和国的国家名称、国旗、国徽、国歌、军旗、军徽、军歌、勋章等相同或者近似的，以及同中央国家机关的名称、标志、所在地特定地点的名称或者标志性建筑物的名称、图形相同的；  （二）同外国的国家名称、国旗、国徽、军旗等相同或者近似的，但经该国政府同意的除外；  （三）同政府间国际组织的名称、旗帜、徽记等相同或者近似的，但经该组织同意或者不易误导公众的除外；  （四）与表明实施控制、予以保证的官方标志、检验印记相同或者近似的，但经授权的除外；  （五）同“红十字”、“红新月”的名称、标志相同或者近似的；  （六）带有民族歧视性的；  （七）带有欺骗性，容易使公众对商品的质量等特点或者产地产生误认的；  （八）有害于社会主义道德风尚或者有其他不良影响的。  县级以上行政区划的地名或者公众知晓的外国地名，不得作为商标。但是，地名具有其他含义或者作为集体商标、证明商标组成部分的除外；已经注册的使用地名的商标继续有效。  **第十一条**　下列标志不得作为商标注册：  （一）仅有本商品的通用名称、图形、型号的；  （二）仅直接表示商品的质量、主要原料、功能、用途、重量、数量及其他特点的；  （三）其他缺乏显著特征的。  前款所列标志经过使用取得显著特征，并便于识别的，可以作为商标注册。  **第十二条**　以三维标志申请注册商标的，仅由商品自身的性质产生的形状、为获得技术效果而需有的商品形状或者使商品具有实质性价值的形状，不得注册。  **第十三条**　为相关公众所熟知的商标，持有人认为其权利受到侵害时，可以依照本法规定请求驰名商标保护。  就相同或者类似商品申请注册的商标是复制、摹仿或者翻译他人未在中国注册的驰名商标，容易导致混淆的，不予注册并禁止使用。  就不相同或者不相类似商品申请注册的商标是复制、摹仿或者翻译他人已经在中国注册的驰名商标，误导公众，致使该驰名商标注册人的利益可能受到损害的，不予注册并禁止使用。  **第十四条**　驰名商标应当根据当事人的请求，作为处理涉及商标案件需要认定的事实进行认定。认定驰名商标应当考虑下列因素：  （一）相关公众对该商标的知晓程度；  （二）该商标使用的持续时间；  （三）该商标的任何宣传工作的持续时间、程度和地理范围；  （四）该商标作为驰名商标受保护的记录；  （五）该商标驰名的其他因素。  在商标注册审查、工商行政管理部门查处商标违法案件过程中，当事人依照本法第十三条规定主张权利的，商标局根据审查、处理案件的需要，可以对商标驰名情况作出认定。  在商标争议处理过程中，当事人依照本法第十三条规定主张权利的，商标评审委员会根据处理案件的需要，可以对商标驰名情况作出认定。  在商标民事、行政案件审理过程中，当事人依照本法第十三条规定主张权利的，最高人民法院指定的人民法院根据审理案件的需要，可以对商标驰名情况作出认定。  生产、经营者不得将“驰名商标”字样用于商品、商品包装或者容器上，或者用于广告宣传、展览以及其他商业活动中。  **第十五条**　未经授权，代理人或者代表人以自己的名义将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的商标进行注册，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提出异议的，不予注册并禁止使用。  就同一种商品或者类似商品申请注册的商标与他人在先使用的未注册商标相同或者近似，申请人与该他人具有前款规定以外的合同、业务往来关系或者其他关系而明知该他人商标存在，该他人提出异议的，不予注册。  **第十六条**　商标中有商品的地理标志，而该商品并非来源于该标志所标示的地区，误导公众的，不予注册并禁止使用；但是，已经善意取得注册的继续有效。  前款所称地理标志，是指标示某商品来源于某地区，该商品的特定质量、信誉或者其他特征，主要由该地区的自然因素或者人文因素所决定的标志。  **第十七条**　外国人或者外国企业在中国申请商标注册的，应当按其所属国和中华人民共和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办理，或者按对等原则办理。  **第十八条**　申请商标注册或者办理其他商标事宜，可以自行办理，也可以委托依法设立的商标代理机构办理。  外国人或者外国企业在中国申请商标注册和办理其他商标事宜的，应当委托依法设立的商标代理机构办理。  **第十九条**　商标代理机构应当遵循诚实信用原则，遵守法律、行政法规，按照被代理人的委托办理商标注册申请或者其他商标事宜；对在代理过程中知悉的被代理人的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委托人申请注册的商标可能存在本法规定不得注册情形的，商标代理机构应当明确告知委托人。  商标代理机构知道或者应当知道委托人申请注册的商标属于本法第四条、第十五条和第三十二条规定情形的，不得接受其委托。  商标代理机构除对其代理服务申请商标注册外，不得申请注册其他商标。  **第二十条**　商标代理行业组织应当按照章程规定，严格执行吸纳会员的条件，对违反行业自律规范的会员实行惩戒。商标代理行业组织对其吸纳的会员和对会员的惩戒情况，应当及时向社会公布。  **第二十一条**　商标国际注册遵循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有关国际条约确立的制度，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  **第二章　商标注册的申请**  **第二十二条**　商标注册申请人应当按规定的商品分类表填报使用商标的商品类别和商品名称，提出注册申请。  商标注册申请人可以通过一份申请就多个类别的商品申请注册同一商标。  商标注册申请等有关文件，可以以书面方式或者数据电文方式提出。  **第二十三条**　注册商标需要在核定使用范围之外的商品上取得商标专用权的，应当另行提出注册申请。  **第二十四条**　注册商标需要改变其标志的，应当重新提出注册申请。  **第二十五条**　商标注册申请人自其商标在外国第一次提出商标注册申请之日起六个月内，又在中国就相同商品以同一商标提出商标注册申请的，依照该外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或者按照相互承认优先权的原则，可以享有优先权。  依照前款要求优先权的，应当在提出商标注册申请的时候提出书面声明，并且在三个月内提交第一次提出的商标注册申请文件的副本；未提出书面声明或者逾期未提交商标注册申请文件副本的，视为未要求优先权。  **第二十六条**　商标在中国政府主办的或者承认的国际展览会展出的商品上首次使用的，自该商品展出之日起六个月内，该商标的注册申请人可以享有优先权。  依照前款要求优先权的，应当在提出商标注册申请的时候提出书面声明，并且在三个月内提交展出其商品的展览会名称、在展出商品上使用该商标的证据、展出日期等证明文件；未提出书面声明或者逾期未提交证明文件的，视为未要求优先权。  **第二十七条**　为申请商标注册所申报的事项和所提供的材料应当真实、准确、完整。  **第三章　商标注册的审查和核准**  **第二十八条**　对申请注册的商标，商标局应当自收到商标注册申请文件之日起九个月内审查完毕，符合本法有关规定的，予以初步审定公告。  **第二十九条**　在审查过程中，商标局认为商标注册申请内容需要说明或者修正的，可以要求申请人做出说明或者修正。申请人未做出说明或者修正的，不影响商标局做出审查决定。  **第三十条**　申请注册的商标，凡不符合本法有关规定或者同他人在同一种商品或者类似商品上已经注册的或者初步审定的商标相同或者近似的，由商标局驳回申请，不予公告。  **第三十一条**　两个或者两个以上的商标注册申请人，在同一种商品或者类似商品上，以相同或者近似的商标申请注册的，初步审定并公告申请在先的商标；同一天申请的，初步审定并公告使用在先的商标，驳回其他人的申请，不予公告。  **第三十二条**　申请商标注册不得损害他人现有的在先权利，也不得以不正当手段抢先注册他人已经使用并有一定影响的商标。  **第三十三条**　对初步审定公告的商标，自公告之日起三个月内，在先权利人、利害关系人认为违反本法第十三条第二款和第三款、第十五条、第十六条第一款、第三十条、第三十一条、第三十二条规定的，或者任何人认为违反本法第四条、第十条、第十一条、第十二条、第十九条第四款规定的，可以向商标局提出异议。公告期满无异议的，予以核准注册，发给商标注册证，并予公告。  **第三十四条**　对驳回申请、不予公告的商标，商标局应当书面通知商标注册申请人。商标注册申请人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商标评审委员会申请复审。商标评审委员会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九个月内做出决定，并书面通知申请人。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经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批准，可以延长三个月。当事人对商标评审委员会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十日内向人民法院起诉。  **第三十五条**　对初步审定公告的商标提出异议的，商标局应当听取异议人和被异议人陈述事实和理由，经调查核实后，自公告期满之日起十二个月内做出是否准予注册的决定，并书面通知异议人和被异议人。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经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批准，可以延长六个月。  商标局做出准予注册决定的，发给商标注册证，并予公告。异议人不服的，可以依照本法第四十四条、第四十五条的规定向商标评审委员会请求宣告该注册商标无效。  商标局做出不予注册决定，被异议人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商标评审委员会申请复审。商标评审委员会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十二个月内做出复审决定，并书面通知异议人和被异议人。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经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批准，可以延长六个月。被异议人对商标评审委员会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十日内向人民法院起诉。人民法院应当通知异议人作为第三人参加诉讼。  商标评审委员会在依照前款规定进行复审的过程中，所涉及的在先权利的确定必须以人民法院正在审理或者行政机关正在处理的另一案件的结果为依据的，可以中止审查。中止原因消除后，应当恢复审查程序。  **第三十六条**　法定期限届满，当事人对商标局做出的驳回申请决定、不予注册决定不申请复审或者对商标评审委员会做出的复审决定不向人民法院起诉的，驳回申请决定、不予注册决定或者复审决定生效。  经审查异议不成立而准予注册的商标，商标注册申请人取得商标专用权的时间自初步审定公告三个月期满之日起计算。自该商标公告期满之日起至准予注册决定做出前，对他人在同一种或者类似商品上使用与该商标相同或者近似的标志的行为不具有追溯力；但是，因该使用人的恶意给商标注册人造成的损失，应当给予赔偿。  **第三十七条**　对商标注册申请和商标复审申请应当及时进行审查。  **第三十八条**　商标注册申请人或者注册人发现商标申请文件或者注册文件有明显错误的，可以申请更正。商标局依法在其职权范围内作出更正，并通知当事人。  前款所称更正错误不涉及商标申请文件或者注册文件的实质性内容。  **第四章　注册商标的续展、变更、转让和使用许可**  **第三十九条** 注册商标的有效期为十年，自核准注册之日起计算。  **第四十条**　注册商标有效期满，需要继续使用的，商标注册人应当在期满前十二个月内按照规定办理续展手续；在此期间未能办理的，可以给予六个月的宽展期。每次续展注册的有效期为十年，自该商标上一届有效期满次日起计算。期满未办理续展手续的，注销其注册商标。  商标局应当对续展注册的商标予以公告。  **第四十一条**　注册商标需要变更注册人的名义、地址或者其他注册事项的，应当提出变更申请。  **第四十二条**　转让注册商标的，转让人和受让人应当签订转让协议，并共同向商标局提出申请。受让人应当保证使用该注册商标的商品质量。  转让注册商标的，商标注册人对其在同一种商品上注册的近似的商标，或者在类似商品上注册的相同或者近似的商标，应当一并转让。  对容易导致混淆或者有其他不良影响的转让，商标局不予核准，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转让注册商标经核准后，予以公告。受让人自公告之日起享有商标专用权。  **第四十三条**　商标注册人可以通过签订商标使用许可合同，许可他人使用其注册商标。许可人应当监督被许可人使用其注册商标的商品质量。被许可人应当保证使用该注册商标的商品质量。  经许可使用他人注册商标的，必须在使用该注册商标的商品上标明被许可人的名称和商品产地。  许可他人使用其注册商标的，许可人应当将其商标使用许可报商标局备案，由商标局公告。商标使用许可未经备案不得对抗善意第三人。  **第五章　注册商标的无效宣告**  **第四十四条**　已经注册的商标，违反本法第四条、第十条、第十一条、第十二条、第十九条第四款规定的，或者是以欺骗手段或者其他不正当手段取得注册的，由商标局宣告该注册商标无效；其他单位或者个人可以请求商标评审委员会宣告该注册商标无效。  商标局做出宣告注册商标无效的决定，应当书面通知当事人。当事人对商标局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商标评审委员会申请复审。商标评审委员会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九个月内做出决定，并书面通知当事人。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经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批准，可以延长三个月。当事人对商标评审委员会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十日内向人民法院起诉。  其他单位或者个人请求商标评审委员会宣告注册商标无效的，商标评审委员会收到申请后，应当书面通知有关当事人，并限期提出答辩。商标评审委员会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九个月内做出维持注册商标或者宣告注册商标无效的裁定，并书面通知当事人。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经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批准，可以延长三个月。当事人对商标评审委员会的裁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十日内向人民法院起诉。人民法院应当通知商标裁定程序的对方当事人作为第三人参加诉讼。  **第四十五条**　已经注册的商标，违反本法第十三条第二款和第三款、第十五条、第十六条第一款、第三十条、第三十一条、第三十二条规定的，自商标注册之日起五年内，在先权利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请求商标评审委员会宣告该注册商标无效。对恶意注册的，驰名商标所有人不受五年的时间限制。  商标评审委员会收到宣告注册商标无效的申请后，应当书面通知有关当事人，并限期提出答辩。商标评审委员会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十二个月内做出维持注册商标或者宣告注册商标无效的裁定，并书面通知当事人。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经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批准，可以延长六个月。当事人对商标评审委员会的裁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十日内向人民法院起诉。人民法院应当通知商标裁定程序的对方当事人作为第三人参加诉讼。  商标评审委员会在依照前款规定对无效宣告请求进行审查的过程中，所涉及的在先权利的确定必须以人民法院正在审理或者行政机关正在处理的另一案件的结果为依据的，可以中止审查。中止原因消除后，应当恢复审查程序。  **第四十六条**　法定期限届满，当事人对商标局宣告注册商标无效的决定不申请复审或者对商标评审委员会的复审决定、维持注册商标或者宣告注册商标无效的裁定不向人民法院起诉的，商标局的决定或者商标评审委员会的复审决定、裁定生效。  **第四十七条**　依照本法第四十四条、第四十五条的规定宣告无效的注册商标，由商标局予以公告，该注册商标专用权视为自始即不存在。  宣告注册商标无效的决定或者裁定，对宣告无效前人民法院做出并已执行的商标侵权案件的判决、裁定、调解书和工商行政管理部门做出并已执行的商标侵权案件的处理决定以及已经履行的商标转让或者使用许可合同不具有追溯力。但是，因商标注册人的恶意给他人造成的损失，应当给予赔偿。  依照前款规定不返还商标侵权赔偿金、商标转让费、商标使用费，明显违反公平原则的，应当全部或者部分返还。  **第六章　商标使用的管理**  **第四十八条**　本法所称商标的使用，是指将商标用于商品、商品包装或者容器以及商品交易文书上，或者将商标用于广告宣传、展览以及其他商业活动中，用于识别商品来源的行为。  **第四十九条**　商标注册人在使用注册商标的过程中，自行改变注册商标、注册人名义、地址或者其他注册事项的，由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期满不改正的，由商标局撤销其注册商标。  注册商标成为其核定使用的商品的通用名称或者没有正当理由连续三年不使用的，任何单位或者个人可以向商标局申请撤销该注册商标。商标局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九个月内做出决定。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经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批准，可以延长三个月。  **第五十条**　注册商标被撤销、被宣告无效或者期满不再续展的，自撤销、宣告无效或者注销之日起一年内，商标局对与该商标相同或者近似的商标注册申请，不予核准。  **第五十一条**　违反本法第六条规定的，由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限期申请注册，违法经营额五万元以上的，可以处违法经营额百分之二十以下的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万元的，可以处一万元以下的罚款。  **第五十二条**　将未注册商标冒充注册商标使用的，或者使用未注册商标违反本法第十条规定的，由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予以制止，限期改正，并可以予以通报，违法经营额五万元以上的，可以处违法经营额百分之二十以下的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万元的，可以处一万元以下的罚款。  **第五十三条**　违反本法第十四条第五款规定的，由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处十万元罚款。  **第五十四条**　对商标局撤销或者不予撤销注册商标的决定，当事人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商标评审委员会申请复审。商标评审委员会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九个月内做出决定，并书面通知当事人。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经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批准，可以延长三个月。当事人对商标评审委员会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十日内向人民法院起诉。  **第五十五条**　法定期限届满，当事人对商标局做出的撤销注册商标的决定不申请复审或者对商标评审委员会做出的复审决定不向人民法院起诉的，撤销注册商标的决定、复审决定生效。  被撤销的注册商标，由商标局予以公告，该注册商标专用权自公告之日起终止。  **第七章　注册商标专用权的保护**  **第五十六条**　注册商标的专用权，以核准注册的商标和核定使用的商品为限。  **第五十七条**　有下列行为之一的，均属侵犯注册商标专用权：  （一）未经商标注册人的许可，在同一种商品上使用与其注册商标相同的商标的；  （二）未经商标注册人的许可，在同一种商品上使用与其注册商标近似的商标，或者在类似商品上使用与其注册商标相同或者近似的商标，容易导致混淆的；  （三）销售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商品的；  （四）伪造、擅自制造他人注册商标标识或者销售伪造、擅自制造的注册商标标识的；  （五）未经商标注册人同意，更换其注册商标并将该更换商标的商品又投入市场的；  （六）故意为侵犯他人商标专用权行为提供便利条件，帮助他人实施侵犯商标专用权行为的；  （七）给他人的注册商标专用权造成其他损害的。  **第五十八条**　将他人注册商标、未注册的驰名商标作为企业名称中的字号使用，误导公众，构成不正当竞争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处理。  **第五十九条**　注册商标中含有的本商品的通用名称、图形、型号，或者直接表示商品的质量、主要原料、功能、用途、重量、数量及其他特点，或者含有的地名，注册商标专用权人无权禁止他人正当使用。  三维标志注册商标中含有的商品自身的性质产生的形状、为获得技术效果而需有的商品形状或者使商品具有实质性价值的形状，注册商标专用权人无权禁止他人正当使用。  商标注册人申请商标注册前，他人已经在同一种商品或者类似商品上先于商标注册人使用与注册商标相同或者近似并有一定影响的商标的，注册商标专用权人无权禁止该使用人在原使用范围内继续使用该商标，但可以要求其附加适当区别标识。  **第六十条**　有本法第五十七条所列侵犯注册商标专用权行为之一，引起纠纷的，由当事人协商解决；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商标注册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向人民法院起诉，也可以请求工商行政管理部门处理。  工商行政管理部门处理时，认定侵权行为成立的，责令立即停止侵权行为，没收、销毁侵权商品和主要用于制造侵权商品、伪造注册商标标识的工具，违法经营额五万元以上的，可以处违法经营额五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万元的，可以处二十五万元以下的罚款。对五年内实施两次以上商标侵权行为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应当从重处罚。销售不知道是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商品，能证明该商品是自己合法取得并说明提供者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销售。  对侵犯商标专用权的赔偿数额的争议，当事人可以请求进行处理的工商行政管理部门调解，也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向人民法院起诉。经工商行政管理部门调解，当事人未达成协议或者调解书生效后不履行的，当事人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向人民法院起诉。  **第六十一条**　对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行为，工商行政管理部门有权依法查处；涉嫌犯罪的，应当及时移送司法机关依法处理。  **第六十二条**　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根据已经取得的违法嫌疑证据或者举报，对涉嫌侵犯他人注册商标专用权的行为进行查处时，可以行使下列职权：  （一）询问有关当事人，调查与侵犯他人注册商标专用权有关的情况；  （二）查阅、复制当事人与侵权活动有关的合同、发票、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三）对当事人涉嫌从事侵犯他人注册商标专用权活动的场所实施现场检查；  （四）检查与侵权活动有关的物品；对有证据证明是侵犯他人注册商标专用权的物品，可以查封或者扣押。  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行使前款规定的职权时，当事人应当予以协助、配合，不得拒绝、阻挠。  在查处商标侵权案件过程中，对商标权属存在争议或者权利人同时向人民法院提起商标侵权诉讼的，工商行政管理部门可以中止案件的查处。中止原因消除后，应当恢复或者终结案件查处程序。  **第六十三条**　侵犯商标专用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确定的，可以按照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商标许可使用费的倍数合理确定。对恶意侵犯商标专用权，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上述方法确定数额的一倍以上五倍以下确定赔偿数额。赔偿数额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人民法院为确定赔偿数额，在权利人已经尽力举证，而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主要由侵权人掌握的情况下，可以责令侵权人提供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侵权人不提供或者提供虚假的账簿、资料的，人民法院可以参考权利人的主张和提供的证据判定赔偿数额。  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注册商标许可使用费难以确定的，由人民法院根据侵权行为的情节判决给予五百万元以下的赔偿。  人民法院审理商标纠纷案件，应权利人请求，对属于假冒注册商标的商品，除特殊情况外，责令销毁；对主要用于制造假冒注册商标的商品的材料、工具，责令销毁，且不予补偿；或者在特殊情况下，责令禁止前述材料、工具进入商业渠道，且不予补偿。  假冒注册商标的商品不得在仅去除假冒注册商标后进入商业渠道。  **第六十四条**　注册商标专用权人请求赔偿，被控侵权人以注册商标专用权人未使用注册商标提出抗辩的，人民法院可以要求注册商标专用权人提供此前三年内实际使用该注册商标的证据。注册商标专用权人不能证明此前三年内实际使用过该注册商标，也不能证明因侵权行为受到其他损失的，被控侵权人不承担赔偿责任。  销售不知道是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商品，能证明该商品是自己合法取得并说明提供者的，不承担赔偿责任。  **第六十五条**　商标注册人或者利害关系人有证据证明他人正在实施或者即将实施侵犯其注册商标专用权的行为，如不及时制止将会使其合法权益受到难以弥补的损害的，可以依法在起诉前向人民法院申请采取责令停止有关行为和财产保全的措施。  **第六十六条**　为制止侵权行为，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情况下，商标注册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依法在起诉前向人民法院申请保全证据。  **第六十七条**　未经商标注册人许可，在同一种商品上使用与其注册商标相同的商标，构成犯罪的，除赔偿被侵权人的损失外，依法追究刑事责任。  伪造、擅自制造他人注册商标标识或者销售伪造、擅自制造的注册商标标识，构成犯罪的，除赔偿被侵权人的损失外，依法追究刑事责任。  销售明知是假冒注册商标的商品，构成犯罪的，除赔偿被侵权人的损失外，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十八条**　商标代理机构有下列行为之一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办理商标事宜过程中，伪造、变造或者使用伪造、变造的法律文件、印章、签名的；  （二）以诋毁其他商标代理机构等手段招徕商标代理业务或者以其他不正当手段扰乱商标代理市场秩序的；  （三）违反本法第四条、第十九条第三款和第四款规定的。  商标代理机构有前款规定行为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记入信用档案；情节严重的，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并可以决定停止受理其办理商标代理业务，予以公告。  商标代理机构违反诚实信用原则，侵害委托人合法利益的，应当依法承担民事责任，并由商标代理行业组织按照章程规定予以惩戒。  对恶意申请商标注册的，根据情节给予警告、罚款等行政处罚；对恶意提起商标诉讼的，由人民法院依法给予处罚。  **第六十九条**　从事商标注册、管理和复审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员必须秉公执法，廉洁自律，忠于职守，文明服务。  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以及从事商标注册、管理和复审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员不得从事商标代理业务和商品生产经营活动。  **第七十条**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建立健全内部监督制度，对负责商标注册、管理和复审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员执行法律、行政法规和遵守纪律的情况，进行监督检查。  **第七十一条**　从事商标注册、管理和复审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违法办理商标注册、管理和复审事项，收受当事人财物，牟取不正当利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第八章　附　则**  **第七十二条**　申请商标注册和办理其他商标事宜的，应当缴纳费用，具体收费标准另定。  **第七十三条**　本法自1983年3月1日起施行。1963年4月10日国务院公布的《商标管理条例》同时废止；其他有关商标管理的规定，凡与本法抵触的，同时失效。  本法施行前已经注册的商标继续有效。 |